

무배당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2005년 6월 일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은원환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 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

2. 보험 세목

보험종류	보험형태 (이율확정기간)
달러(Dollar)형	10년 이율확정
유로(Euro)형	7년 이율확정
원화(KRW)형	5년 이율확정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방법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보증금액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5년 · 10년 · 15년 · 20년]			확정연금형 [5년 · 10년 · 15년 · 20년]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	

4. 보험료 납입기간 및 주기, 연금개시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개시나이	보험기간
일시납	- 개인계약 : 45~75세형 - 부부계약 : 45~75세형 (단,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	- 제 1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생존연금 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제 2 보험기간 제 1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단,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 까지)

5. 가입나이

구분	가입나이
최초이율확정기간 10년	만 15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최초이율확정기간 7년	만 15세 ~ (연금개시나이 - 7)세
최초이율확정기간 5년	만 15세 ~ (연금개시나이 - 5)세

단, 달러형, 유로형에 한하여 최초이율확정기간 5년의 경우:

66세 ~ 72세 연금개시는 만 15세 ~ (연금개시나이 - 7)세,

73세 이후 연금개시는 만 15세 ~ 65세 가능

6. 최저납입보험료

달러(Dollar)형:US 5,000\$ 이상

유로(Euro)형:EUR 5,000€ 이상

원화(KRW)형: 5,000,000₩ 이상

7.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

8.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일시납보험료의 100%로 함.

9. 기타

가. 통 화

- (1) 달러형 : 이 보험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국통화” 라 한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미국 통화로 한다.
- (2) 유로형 : 이 보험계약의 통화는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이하 “유로통화” 라 한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유로 통화로 한다.
- (3) 원화형 : 이 보험계약의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이하 “원화통화” 라 한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원화 통화로 한다.

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이율

- (1) 이 보험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2) (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과 16일에 회사가 공시기준이율과 조정이율에 의거 각각 보험종류별, 보험형태별로 공시이율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 적용하며, 보험가입시점의 보험종류별, 보험형태별 공시이율은 보험가입시점부터 각각 최초 10년, 7년, 5년간은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율확정기간 이후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선택한 이율확정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 (3) 공시기준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 = \left\{ A - \frac{\log(100 \times A + 1)}{100} \right\}$$

공시이율(%) = 공시기준이율 × 조정이율

[주]

(가) A : 기준금리

- 이율확정기간종

① 달러형 : 이율 확정기간이 10년, 7년, 5년인 경우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가 인터넷(<http://federalreserve.gov/releases/>)을 통하여 매일 공시하는 10년, 7년, 5년 미국 달러 금리 스왑(Interest rate swaps)을 각각의 평균값을 매월1일과 16일 정하여 적용한다. 위의 평균값은 매월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4번째 영업일에서 13번째 영업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사업방법서의 공시이율 산출에 적용하는 미국달러 금리 스왑률의 평균값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② 유로형 : 이율 확정기간이 10년, 7년, 5년인 경우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의 단말기(Bloomberg Terminal)를 통해서 매일 공시하는 EUSA10, EUSA7, EUSA5 에 각각 표시되는 NY 기준 Composite 10년, 7년, 5년 유럽연합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을 (bid rate) 각각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 정하여 적용한다. 위의 평균값은 매월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4번째 영업일에서 13번째 영업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사업방법서의 공시이율 산출에 적용하는 유로 금리스왑률의 평균값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단, 블룸버그 단말기(Bloomberg Terminal)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로이터 단말기(Reuter Terminal)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③ 원화형 : A (기준금리) = $\frac{C + D}{2}$

C : 이율 확정기간이 10년, 5년인 경우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0년, 5년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 각각의 평균값을 매월1일과 16일에 정하여 적용하고, 7년만기의 경우는 위에서 계산한 10년과 5년만기의 국고채권 수익률의 평균값을 직선보간하여 계산한 값을 매월1일과 16일에 정하여 적용한다.

D :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무보증 AAA회사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평균값을 매월1일과 16일에 정하여 적용한다.

위의 평균값은 매월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4번째 영업일에서 13번째 영업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사업방법서의 공시이율 산출에 적용하는 원화형 기준금리의 평균값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 이율확정기간 이후 및 제2보험기간

① 달러형 :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인터넷(<http://federalreserve.gov/releases/>)을 통하여 매일 공시하는 3년 미국 달러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율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 정하여 적용한다.

② 유로형 :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이 단말기(Bloomberg Terminal)를 통해서 매일 공시하

는 EUSA3에 표시되는 NY 기준 Composite 3년 유럽연합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을 (bid rate)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 정하여 적용한다.

단, 블룸버그 단말기(Bloomberg Terminal)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로이터 단말기(Reuter Terminal)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textcircled{3} \text{ 원화형 : } A \text{ (기준금리)} = \frac{C + D}{2}$$

C :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정하여 적용한다.

D :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AAA회사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정하여 적용한다.

(나) 조정이율

시장금리의 대표성과 객관성 및 실제금리 적용시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달러형의 경우 미국달러 금리 스왑율을, 유로형의 경우 유로 금리 스왑율을 원화형의 경우 국고채, AAA 회사채수익률을 지표금리로 사용하지만 과거 지표금리가 장래에 적용됨으로써 실제 적용시점의 지표금리와 금리차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많은 경우 실제 투자자산의 종류 및 구성비가 공시하는 지표금리와 다르게 되므로, 투자되는 자산의 수익률(이율확정기간 중의 공시이율에 대하여는 투자될 자산의 예상 수익률, 이율확정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에 대하여는 이미 투자된 자산의 현재 수익률과 향후 투자될 자산의 예상 수익률의 추정 가중평균값)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4) 최초이율확정기간이 제 1 보험기간 중 종료된 후 새로운 이율확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경우의 공시이율은 직전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 다음날(이하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이라 한다)의 공시이율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재설정 시점의 보험종류별, 보험형태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부터 각각 10년, 7년, 5년간은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한다
- (5) (4)호의 경우에는 불구하고 최초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후 제 1 보험기간의 잔여년수가 5년미만인 경우에는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6) (4)호에서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할 때 장래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율확정기간이 5년, 7년, 10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이율확정기간으로 재설정할 수 있다
- (7) 최초 이율확정기간이 10년 또는 7년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시점부터 1년간 각각 1.0%와 0.5%의 금리(이하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이라 한다)를 더하여 적립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보험의 최초 이율확정기간이 10년과 7년의 계약이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이율확정기간(10년, 7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9)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달러형, 유로형의 경우 최초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연 복리 1.5% (일복리 0.004079%), 최초 이율확정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연 복리 1.0% (일복리 0.002726%)로 하고, 원화형의 경우 최초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연 복리 2.5% (일복리 0.006765%), 최초 이율확정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연 복리 2.0% (일복리 0.005426%)로 한다.

다.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는 연금계약 적립금액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공시이율} + 0.4\%} \right\}^{\text{잔여월수}/12}$$

단,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 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한다.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은 재설정한 시점의 공시이율로 하며, 해지 시점의 공시이율은 해지시점에 해지계약의 이율확정기간과 동일한 이율확정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로 한다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4) 장래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위의 공시이율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하며, 계약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변경일부터 1개월 전에 통지한다.

마. 자산의 운용

(1) 이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운용한다.

(2) 이 보험의 자산은 보험종류별 이율확정기간에 해당 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고채, S&P에서 신용등급 BBB-이상(또는 이와 동등한 신용등급)의 회사채, 유동성확보를 위한 단기금융 상품 및 현금을 그 주된 운용 자산으로 한다.

바. 책임준비금의 원화 평가에 관한 사항

(1) 책임준비금의 원화 평가는 평가일 기준 “한국은행 공시 환율”의 종가 환율을 적용한다.

(2) 평가일 종가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고시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3) 장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환율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한다.

사.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으로 한다.

(2) (1)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